

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	10278
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21.

발의자 : 설훈 · 김영진 · 이석현

이용득 · 조승래 · 오영훈

유은혜 · 김상희 · 안민석

소병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마련,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으며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자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.

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조).

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수립하여야”를 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를 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, 절차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을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지사”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,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.

② (현행과 같음)